

【 4 】 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8. 4.

제출자 : 양주시장

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불합리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가. 안 제3조제2항 :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⇒
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

나. 안 제7조 :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⇒
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 “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”를
“양주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0조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9조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정책개발담당이”를 “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”로 한다.

제12조중 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②양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중 “제13조의3제1항의”를 각각 “제15조제1항의”로 한다.

③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”를 “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제13조의4의”를 “제16조의”로 한다.

④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83조 및 제95조”를 “제91조 및 제104조”로 한다.

⑤양주시 리·통장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44조”를 “제81조”로 한다.

⑥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항 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”를 “「양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」”로 한다.

⑦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”를 “「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의”로 하고, 제3항중 “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”를 “「지방공무

원임용령」 제2조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중 “예산회계법,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”를
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” 및 “지방재정법”에”로 한다.

⑧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⑨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133조”를 “제14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제117조제2항”을 “제12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중 “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10조중 “「예산회계법」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⑩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”를
“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제2항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“도로법”을 각각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지방자치법 제131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
의”로 한다.

⑪양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”로 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</u>	<u>양주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</u>
제3조(조례) ① (생략) ② <u>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</u> ----- ----- <u>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</u> -----	제3조(조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26조 제6항 -----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26조 제6항 --
제7조(공포방법) ----- ----- <u>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</u> -----	제7조(공포방법) -----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26조 제6항 -----